

[별표 7] <개정 2008.9.11>

국민주택기금운용·관리사무 및 채권등록업무수수료(제37조제1항 관련)

1.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월별 국민주택기금 운용·관리사무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.

$$\sum(X_i a_i)$$

※ "X<sub>i</sub>" 및 "a<sub>i</sub>"는 제2호의 표 중 각각 수수료동인 및 수수료단가를 말한다.

2. 제1호에 따른 수수료동인별 수수료단가

| 구 분 | 과 목     | 수수료동인(X <sub>i</sub> ) |            | 수수료단가(a <sub>i</sub> )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조 성 | 청 약 저 축 | 신규좌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13,209.38원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잔고좌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558.12원                |
|     | 채 권     | 발행/해약/상환건수             |            | 6,285.74원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MT상환매수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119.34원                |
| 운 용 | 사업자대출   | 신규좌수                   | 공공기관       | 1,937,042.51원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민간 대출승인    | 8,232,430.65원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민간 준공급지급   | 9,200,951.91원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매입임대       | 665,858.36원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대 환        | 605,325.78원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전 환        | 221,952.79원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잔고좌수                   | 공공기관       | 1,224.87원 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민 간        | 11,023.84원 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세대수                    | 세대별 근저당 분리 | 27,969원                |
|     | 수요자대출   | 신규좌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269,752.24원            |
|     |         | 잔고좌수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3,417.18원              |

비 고 : 1. 수수료동인은 정상처리된 것만을 말한다.

2. 사업자에게 대출된 자금 중 법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는 사업자대출, 개인 앞으로 대환하는 경우는 수요자대출로 한다.

3. 사업자대출 중 공공기관 및 민간에 대한 신규좌수 수수료동인에는 매입임대, 대환, 전환 및 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

4. 잔고좌수는 월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5. 세대별 근저당 분리에 따른 세대수는 별도의 잔고 좌수로 보지 아니한다.

3. 영 제91조제5항에 따른 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의 산정은 다음의 산정식에 의한다.

$$\text{월별 채권등록업무 수수료} = \text{영업일기준 일별 150만원} + \text{영업일기준 일별 등록}$$

금액 100억원 초과금액의 1/100,000